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11:00
2026. 11. 11.(수) 조간
배포 2006. 11. 10(화) 6:00

농식품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 개최

- 특별조치법안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30일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농업인 등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및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설명회는 11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 개최된다. 설명회에는 지방정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 기관 및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지과(특별조치법팀)	책임자	팀 장	이원형 (044-201-2740)
		담당자	사무관	이명현 (044-201-17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